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01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이주환·김용판·안병길

권명호 · 정찬민 · 이헌승

이명수 • 전봉민 • 김학용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주택가를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등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 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 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dB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또한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dB보다 훨씬 높아도 105dB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어 대부분 소음 민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임.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 조제3항 신설).
- 나.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다.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함 (안 제35조제2항 신설).
- 라.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생략에"를 "생략, 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제 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배기소음의 인증·변경인증 받은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 ① 환경 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 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 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배기소음의 인증· 변경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 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기소음의 인증·변경인증받은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6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제35조제1항 · 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인증표시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시행 전에 제31조에 따른 인증받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다.

- 1.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변경
-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음방지장치의 튜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
	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배기소음의 인증・변경인증 받
	은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
	<u>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u>정</u>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u>생략에</u> 필요한 사항은	<u>생략, 인증의 표시방법에</u>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관하여</u>
<u><신 설></u>	제33조의2(자동차 소음・진동 정
	보관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
	음・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
	•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진
	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
	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생 략)

<신 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 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자 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 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 1조제3항에 따른 배기소음의 인증 · 변경인증 받은 결과 값 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 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 게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 기소음의 인증・변경인증받 은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u>1</u>.·<u>2</u>. (생 략)
- ② (생략)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 7. ~ 10. (생략)
- ④ (생 략)

-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3-----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3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7. ~ 10.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